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10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		사업연도	2025-01-01 ~ 2025-12-31
① 법인(단체)명	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협회	② 사업자등록번호	109-82-191**
③ 대표자 성명	한성화	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	지정일 : 2024-09-30 만료일 : 2027-09-30
⑤ 소재지	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, 6층 606호(성수동1가)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www.siwakorea.org

2. 의무이행 여부

	⑨ 의무		⑩ 의무이행 여부	⑪ 점검결과
⑧	가.	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목적 추가됨)다만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8조제8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-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수행할 것 -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·자선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일 것	여	해당없음
	나.	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여	해당없음
	다.	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사항 관리・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	여	해당없음
	라.	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(가) 의무를 이행할 것	여	해당없음
	마.	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. 다만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	여	해당없음
	바.	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여	해당없음
	사.	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	여	해당없음
	아.	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	여	해당없음
	자.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여	해당없음
	차.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여	해당없음
	카.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여	해당없음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일 일

제출인 :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협회 (단체의 직인)[인]

귀하

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26 년 03 월 30 일

(통보기관의 장)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④란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)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.

210㎜×297㎜ 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